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 및 사업대상 확대〉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60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2215760)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 및 사업대상 확대(안 제18조제5항 등)	3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221576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대림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2. 30.
3. 회 부 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소음대책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시·군·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되고 있음. 시·군·구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로 보수, 보강 사업을 하거나 비품 등 자산 취득이 가능한데 비하여,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마을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한 지원이 어려워 주민지원사업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괴리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

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소음 피해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및 제19조 제1항).

Ⅲ. 검토의견

1.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 및 사업대상 확대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를 법인·단체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사업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략)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u>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u> <u><신설></u> <u><신설></u>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 ----- <u>시행하거나 법인·단체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u> -----. 1. <u>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공모방식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시설물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u> 2. <u>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복지사업 중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의</u>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⑥ · ⑦ (생략)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u>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u>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3. (생략) ② · ③ (생략)	<u>관리를 위한 사업</u>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 -----. 1. -----<u>도서관, 체육공원 등 공동이용시설(주민이 공동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의</u>----- ----- -----. 2.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도서관, 체육공원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의 경우에만 공항시설관리자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¹⁾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구분	사업종류	세부내용	지원비율
1. 주민 복지 사업	가.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양로시설, 경로당,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75/100
	나. 체육사업	체육공원 등 체육 관련 시설 또는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75/100
	다. 교육문화사업	도서관 또는 교육·문화 관련 시설의 설치	75/100
	라. 그 밖의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5/100
2. 소득 증대	가. 공동작업장 사업	공동이용을 위한 소규모 공용 창고, 구관장의 설치, 지역 대표 작물의 공동작업장 설치 또는 공동 육묘장 퇴비시설 설치	75/100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사업	나. 공동영농사업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농작물 재배시설의 설치 또는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75/100
	다. 일자리 창출 사업	취약계층, 여성, 노인 또는 청년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75/100
	라. 그 밖의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5/100

【 주민지원사업 예시 】

		
구로구 한옥어린이도서관	양천구 양천중앙도서관	부천시 고리울 청소년문화의집

※ 자료 : 공항소음포털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항공사는 위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정부의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음.²⁾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자금)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3. 29.>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공항소음대책사업

2. 주민지원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이 시·군·구의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시·군·구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로 보수, 보강 사업을 하거나 비품 등 자산 취득이 가능한데 비하여,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마을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한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소음피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관리하는 공동이용 시설에도 주민지원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도 사업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으로,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종전(2016.7. 이전)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별 시행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법인도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가 될 수 있었으나, 공공재산 사유화, 주민과 업체 간 사업비 부풀리기, 지원금 횡령 등 주민 간 이해상충, 무분별한 사업시행 및 정산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³⁾

3) 국토교통부, 김포시, 한국공항공사 의견

이에 주민 간 갈등과 민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699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한하여 주민지원사업 시행자가 되도록 개정되어 현행에 이르고 있는데, 법인 등으로 시행주체를 확대할 경우 주민 간 갈등·이해상충 등 당시 지적된 문제의 재발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 종전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연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4.11.22 시행) [법률 제12636호, 2014. 5. 21, 일부개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6.7.1 시행) [법률 제13699호, 2015. 12. 31, 일부개정] * 현행과 동일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략)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규모 및 사업별 시행주체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제4항의 협의에 따라 사업별 시행 주체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단서 삭제>

한편,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관리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주민지원사업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공동이용시설이 현행 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경우 현행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동이용시설은 소유 형태와 관리방식이 다양하여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주민 간 형평성 논란 및 갈등 유발 우려가 있으며 현행 규정으로도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공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7. 17.>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일 것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법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일 것
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일 것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일 것

「김포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법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 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부천시 공향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성사업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법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소음민원 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3. 마을단위 오페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 사업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나.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법인·단체 등의 경우 예산집행 등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 선정 과정·결과를 둘러싼 주민갈등 및 특정 지역·대상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 실제로 2016년 투명성 및 주민갈등 등의 사유로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만 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바 있음.

주민 소유·관리시설 지원은 공동소유 관리시설의 경우 책임주체가 불명확하여 사후 관리·감독이 어려워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주민갈등의 문제가 있고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장비·비품 구입비 등 운영·관리 비용까지 지원할 경우 한정된 재원 내에서 더 시급한 주민지원사업 지원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에 대

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김포시 의견

현 개정안은 개정 이전(2016.7.1. 시행)과 같이 법인·단체의 사업시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당시 자체부담금 확보가 용이한 공동주택 위주로 집중이 지원되었고, 그 외 마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 간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개정안은 당시 제도개선 취지와 배치될 우려가 있으며, 일부 공동주택 내부시설(경로당, 체육관 등)에 예산이 투입될 경우 특정 주민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부천시 의견

다른 복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도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공동이용시설은 소유 형태와 관리방식이 다양하여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주민 간 형평성 논란 및 갈등 유발 우려가 커 현행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한국공항공사 의견

공공재산 사유화 사례, 주민과 업체 간 사업비 부풀리기, 지원금 횡령

등 주민 간 이해상충, 무분별한 사업시행 및 정산 오류 등 문제점으로 법이 개정(2016.7.1. 시행)되었으므로 주민지원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현행절차와 같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법상으로도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0